

委員會運營規程

2004年 12月 20日 第2回 定期總會 制定

第 1 條 (目的) 이 規程은 委員會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 (事業) 委員會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該當 專門分野의 國際會議를 包含한 研究發表會, 講演會 및 講習會, 規格制定, 理事會에서 委任한 事業을 할 수 있다.

第 3 條 (委員構成) 委員會는 本會 會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 1人, 幹事 1人을 둔다.

第 4 條 (任期) 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當該年度 任員의 任期와 같다. 다만, 계속되는 事業은 任員의 任期와 상관없이 계속 수행한다.

第 5 條 (事業費) ① 運營經費는 本 會에서 支援하는 支援金, 寄附金 및 該當 委員會 事業經費로 充當한다.

② 事業費는 다음 年度로 移越할 수 있다.

第 6 條 (議決) 委員會의 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에 過半數 贊成으로 한다.

第 7 條 (承認) 委員會 事業의 事業計劃(案)과 豫算(案)은 事業開始以前에 理事會의 承認을 받고, 事業이 終了되었을 때는 結果報告書를 理事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第 8 條 (報告書) 委員會는 每 年度末에 當該年度 事業結果와 委員會 運營結果를 理事會에 提出한다.

附 則

1. 本 規程은 2004年 12月 20日부터 施行한다.